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2024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

2024. 1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재해예방 의무	1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 안전보건조직	2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7조 관리감독자	3
제8조 안전관리자	3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4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5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5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5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제14조 협의체 운영	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7
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7
제17조 신규 채용 시 교육	7
제18조 물질안전보건교육	8
제19조 직무교육	8
제20조 안전보건교육강사	9
제21조 교육방법	9
제22조 기록·보존	9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9
--------------------	---

제24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9
제25조 전기설비 안전	10
제26조 안전검사	11
제2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12
제28조 작업중지	12
제29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12
제30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12
제31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13
제32조 교통재해예방	13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3조 작업환경측정	14
제34조 근로자 건강진단	14
제3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15
제36조 안전보건보호구	16
제37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16
제38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16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16
제40조 근골격계질환예방	17
제41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17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8
제4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8
제44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18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19
제46조 위험성평가 교육	19
제47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19
제48조 위험성평가 주기	19
제49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22

제8장 보 칙

제50조 제안제도	20
제51조 포 상	20
제52조 징 계	20
제53조 문서보존연한	21
제54조 변경절차	21
제55조 준 수	21
별표 1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안전보건조직	22
별표 2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보건관리위원회 조직	23
별표 3 각팀 관리감독 담당자	24
붙임 1 시설물 안전담당자	25
붙임 2 작업 허가서	26
붙임 3 공사 계약업체 안전관리 서약서	27
붙임 4 위험 작업 협조 요청서	28
붙임 5 위험 작업 협조 확인서	29
붙임 6 출입허가 요청서	30
붙임 7 2024년 산업안전 보건교육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위탁 업체 포함)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 및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전기작업, 용접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등의 허가서 등이 있다.
6.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계획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계획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해예방 의무) 이 계획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 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재단

- 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한다.
- 마. 지속적으로 재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위험성평가 수행) 이행한다.

2. 각 본부·위탁기관

- 가. 경영조직에서 각 본부·위탁기관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각 본부장·관장·팀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각 본부·위탁기관에서 업무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위탁업체 : 산업안전기술연구원)

-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 수행한다.
- 나. 위험성평가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 다. 기타 재단의 기술적인 업무 등에 협조한다.

4. 근로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 나. 재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 다. 재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 검진을 철저히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 (안전보건조직)

- ①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 ②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 ④ 재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 (관리감독자) 재단은 관리감독자를 각 본부·위탁기관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본부장, 관장, 팀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각 팀의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 및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의 확인
 - 2. 각 팀에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재단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 후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보고
 10. 그 밖에 이 계획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조직 현황은 별표3 참고

제8조 (안전관리자)

- ① 재단은 이 계획 제17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 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재단 내 사업장의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계획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한다.
- ⑤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8조 2항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 ⑦ 재단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재단에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와 업무를 협의 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재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원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 1. 근로자대표
 -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 근로자
-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재단의 기획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도서관본부장, 문화도시센터장, 청소년수련관장
 -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의 재단의 담당자)
 - 3.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지명하는(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 참고 사항 위원회 인원수 최대 9:9, 최소 3:3
- ④ 위원장은 재단의 기획경영본부장을 선임한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 ① 재단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소요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 ① 재단은 법 제24조2항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 ②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재단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및 사내 그룹웨어
2. 게시판 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 현황은 별표2 참고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재단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의 계획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 보건 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이 계획 제1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사내 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단, 산.안.법 시행규칙 제186조 관련 별표21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6. 화재발생 및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 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14조 (협의체 운영)

- ① 재단과 사내하도급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재단 또는 사내 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재단이 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 ④ 사업주 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사내 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협의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근로자 정기교육 계획)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건축, 기계, 전기, 소방교육을 포함한다.
- ③ 안전·보건교육은 재단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 채용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재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년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계획의 제20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신규채용 시 교육)

- ①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은 이 계획의 제1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물질안전보건교육)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 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 된 경우
-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9조 (직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관리감독자
 - 직무교육 : 16시간/년 이상(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년)
-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보건교육강사)

-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재단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한다.

제21조 (교육방법)

- ①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합교육
 - 2. 부서별 순회교육
 - 3. 유인물, 외부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등
 - 4. 회의 등 전달교육

제22조 (기록·보존)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담당자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도 1월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사내 그룹웨어에 게시한다.

제24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아래 각호의 사항을 추가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5조 (전기설비의 안전)

- ① 재단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 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강화할 것
- ② 재단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 ④ 재단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한다.
- ⑤ 재단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⑥ 재단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 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 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 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 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⑦ 재단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 ⑧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6조 (안전검사)

- ① 재단은 재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재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④ 재단은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① 재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재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재단은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8조 (작업중지)

- ①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실·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각 실·부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0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① 재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각 실·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점검방법은 각 실·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자재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계획의 제10조 제9호에 정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⑥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⑦ 관리감독자는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시정지시 하고, 담당자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한다.
-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보고서는 재단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및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시간, 작업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허가를 득 한 후 작업을 시행 한다.
- ② 각 실·부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 (교통재해 예방)

- ① 재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② 재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재단 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3조 (작업환경측정)

- ①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②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한다.
-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계획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1. 작업환경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 ④ 재단은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내 그룹웨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⑤ 재단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 한다.
- ⑥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⑦ 재단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⑧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한다.

제34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재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건강진단
 2. 특수 건강진단
 3.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4. 수시 건강진단
 5. 임시 건강진단
 6. 자율 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재단이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 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일반 건강진단을 특수 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재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⑤ 재단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1. 건강진단기관
 - 2. 산업보건의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⑥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 ⑦ 재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① 재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④ 재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보건 보호구)

- ① 재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이 계획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재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 ⑥ 재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37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 ① 재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환경과 근무여건에 적합한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업무별 근무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 ①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 ① 재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한다.

1. 화학제품과 취급자 기재

2. 유해성·위험성

- | | |
|-------------------|-----------------|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요령 |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15. 법적규제 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 ② 재단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한다.
- ③ 재단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근골격계질환예방)

- ① 재단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을 예방한다.
- ③ 재단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④ 재단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41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재단은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재단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고,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관리감독자(각 팀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각 팀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 ④ 팀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4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단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여 (재)인천 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보건위원회 및 각 팀 관리감독자 담당자 회의 시에 공표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린다.
- ③ 회의 결과는 사내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① 재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기능,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위험성평가 교육) 재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재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제47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재단은 업무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 ④ 본 계획 제49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8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

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9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업무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50조 (제안제도)

- ① 재단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 ② 재단은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한다.

- ③ 재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1조 (포상)

-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각 실·부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재단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2조 (징계)

- ① 재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은 재단의 관계 세칙에 의한다.

제53조 (문서보존연한)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한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3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년)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3년)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3년)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단, 발암성 확인 물질 30년)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3년)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2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3년)
- ②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4조 (변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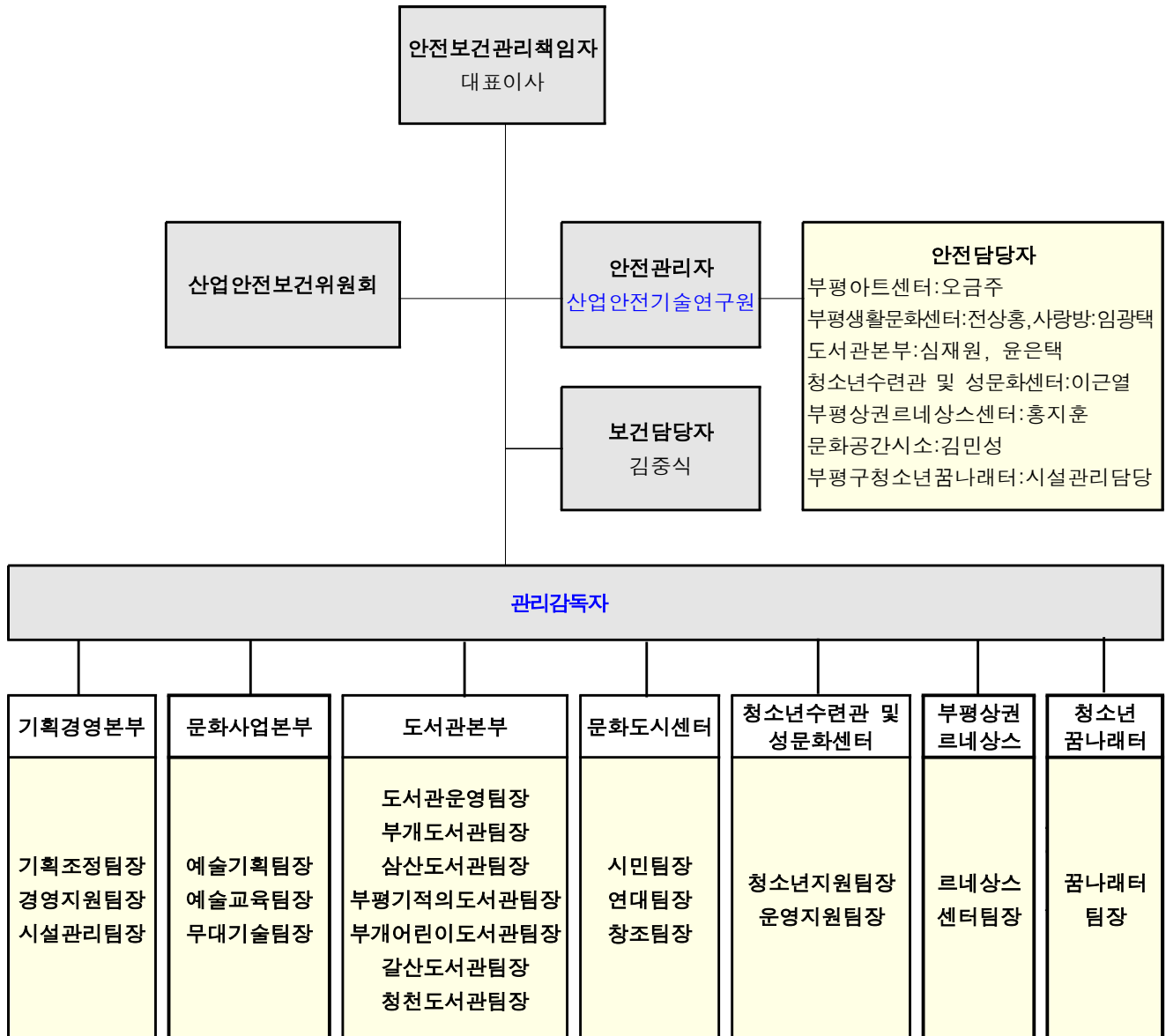
-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린다.

제55조 (준수)

- ① 재단의 모든 근로자는 본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계획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표 1]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안전보건조직



- ※ 안전관련 자문기구로 근로자·사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 안전 및 보건 심의 또는 자문하는 안전경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 개최
- ※ 위의 담당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 현황

회 사 측	근 로 자 측
참 석 자	참 석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표이사	대표 : 근로자대표 김종수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오금주
위원 : 문화사업본부장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김중식
위원 : 도서관본부장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심재원
위원 : 문화도시센터장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이근열
위원 : 청소년수련관장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청소년꿈나래터 시설관리 담당
위원 : 안전관리자	위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자 전상홍
서기 : 황진수	

※ 위의 담당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3]

관리감독자 조직 현황

부서명	관리감독자	확인	부서명	관리감독자	확인
기획조정팀	임정인팀장		부개도서관	공현정팀장	
경영지원팀	김희영팀장		삼산도서관	이미영팀장	
시설관리팀	오금주팀장		부평기적의 도서관	심재원팀장	
예술기획팀	김종수팀장		부개어린이 도서관	강은숙팀장	
예술교육팀	우사라팀장		갈산도서관	김미진A팀장	
무대기술팀	유인태팀장		청천도서관	엄정귀팀장	
도서관운영팀	유은경팀장		시민팀	김유정팀장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홍지훈팀장		연대팀	최인호팀장	
청소년수련관	이상현팀장		창조팀	이미숙팀장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경아팀장		부평구청소년 꿈나래터	팀장	

※ 위의 담당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설물 안전담당자

부서명	성명	확인	부서명	성명	확인
부평아트센터	오금주		부평 문화사랑방	김중식	
부평 생활문화센터	전상홍		도서관본부	심재원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홍지훈		청소년 수련관	이근열	
도서관본부	윤은택		문화공간 시소	김민성	
부평구 청소년꿈나래터	시설관리 담당				

※ 위의 담당자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기획경영본부 2024. . .

신 청 인(업체) : 업체명 책임자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2024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부서 담당자 : 본부 팀 직책 성명 (서명)

협조자(관리감독자) : (서명)

확인자(현장관리자) : (서명)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개요	작업분류
작업장소 : 작업명 :		☐ 화기작업 ☐ 일반위험작업 ☐ 밀폐공간출입작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사용작업 ☐ 기타허가

조치 요구 사항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2024년. 월. 일(). 00 : 00

작업자 : 공사(작업) 책임자 (서명)

확 인 자 : 부(실) (서명)

공사계약업체 안전관리 서약서

< 공사업체 준수사항 >

1. 작업시작 전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시작 전 기계설비 및 공구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3. 자격이 필요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5.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한다.
6. 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
7. 안전모는 턱끈을 매어 안전하게 한다.
8. 고소작업 시는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필히 설치한다.
9. 화기 및 가설전기의 사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
10. 설비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설비 운동부 주변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11. 작업 중에는 흡연을 금하고 음주상태에서의 작업을 금한다.
12. 낙하물 발생 위험 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한다.
13.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4.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작업한다.
15. 안전 위험요소는 발견 즉시 안전조치토록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교육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장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험작업 협조 확인서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담당자	(서명)	연락처	
조치사항			
협의사항			
담당자	소 속	성 명	연락처(내선번호)
	부		
위와같이 위험작업 협조 확인서를 보내드리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장 (서명) _____ 귀하			

[붙임 6]

출입허가 요청서

결	담 당	부 장
재		

출입장소				출입기간							
☐ 출입자 명단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소 속		성 명		연 락 처	
☐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											
작 업 내 용				안 전 조 치 내 용							
상기 와 같이 출입을 요청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											
성 명 : (인)											
연락처 :											
귀 하											
검토 결과 출입을 허락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자 소 속 :											
성 명 : (인)											

2024년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 보건교육 활성화

○ 교육기간 : 2024.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방법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별 교육담당	○ 집합 교육 ○ 부서별 순회교육 ○ 유인물, 외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자료 제공 등 ○ 회의 등 전달교육
	사무직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 6시간		
	보건관리자	보수 24시간		

○ 교육장소 : 각 부서, 세미나실, 회의실 등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 산업 안전, 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전반에 관한 사항

○ 결과보고 : 안전보건교육일지에 매월 결과보고

☐ 2024년 연간 교육 일정한

구분	교육내용	방법	월	비고(보급자료)
채용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소방안전	집합	반기	
작업 변경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소방안전	집합	수시	
정 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소방안전 직종별 안전대책	순회	1	안내자료
	근골격계 부담작업 이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자각증상 설문조사	집합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안전보건표지, 스트레칭 동영상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의 이해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집합	3	관련법령안내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VDT 증후군의 이해와 예방	집합	4	
	유해물질(MSDS)관리	집합	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준수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 안전보건표지
	근로자 건강진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활동(건강관리 중심)	순회	6	관련법령안내 스트레칭 동영상
	산업안전보건 의식 고취	순회	7	안내자료
	하절기 건강관리	순회	8	안내자료
	유해 . 위험한 환경개선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순회	9	안내자료
	뇌심혈관질환예방	순회	10	안내자료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문학강좌	집합	11	안내자료
	동절기 건강관리	순회	12	안내자료